

【 10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2005. 6.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개정이유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개발로 도시화가 가속되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미래 양주에 부합한 주차장의 설치·경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주거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을 정함 (안 제4조)
- 다. 상가지역에 하역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라. 주차방법 및 배치등을 정함 (안 제13조)
- 마. 거주지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바. 공영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함 (안 제15조)
- 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및 공동설치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7조)
- 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18조, 제19조)
- 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제공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21조)
- 차. 육상주차장 설치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22조)
- 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거나 학교운동장을 일반에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설치 비용의 보조근거 마련 (안 제23조)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은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주차수요 및 공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④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800cc 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 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2호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지급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를 최고가격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지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²)×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m²)×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25/1,000(원)×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²)×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원)×25/1,000×기간(년)×지수

* 지수 = 각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때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1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당해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①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거주자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3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와 임무를 가진다.

제15조(자전거 주륵장의 설치)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 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 ("일정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의 자전거 주륵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주륵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일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 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하도록 한다.

제21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예외 제공) ①양주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육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보조) ①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6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보조금 교부방법은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①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

자에게 위반행위를 중벌,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11조,14조,18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주차요금(노상, 노외)			
		30분 기본요금	10분당 추가요금	1일 주차권(선납)	월 정기권(선납)
1급지	소형	500	200	5,000	40,000
	대형	1,000	400	10,000	
2급지	소형	300	100	3,000	40,000
	대형	600	200	6,000	
주거지 전용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주거지 우선 주차제 월정기권은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대형차량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 최초 30분 미만은 30분으로 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운영 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0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국도, 지방도, 시도로부터 500m이내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영주차장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야간주차차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6조, 23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화장시설	0. 시설면적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경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복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빌을 제외한다), 공연장시설(영화관 등)	0.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장례예식장은8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간접업 시설중 골프1제3종 바둑 및 사육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0.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0. 시설면적50㎡초과 150㎡이하 : 1대 0. 시설면적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면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 것), 업무시설중 오피스빌	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빌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복외수영장, 수영장	0.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대) 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 1) 0. 복외수영장 : 정원15인당1대(정원/15인) 0. 수영장 : 정원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0.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계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 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

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미만 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량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과 정 금 가 감 기 준(제2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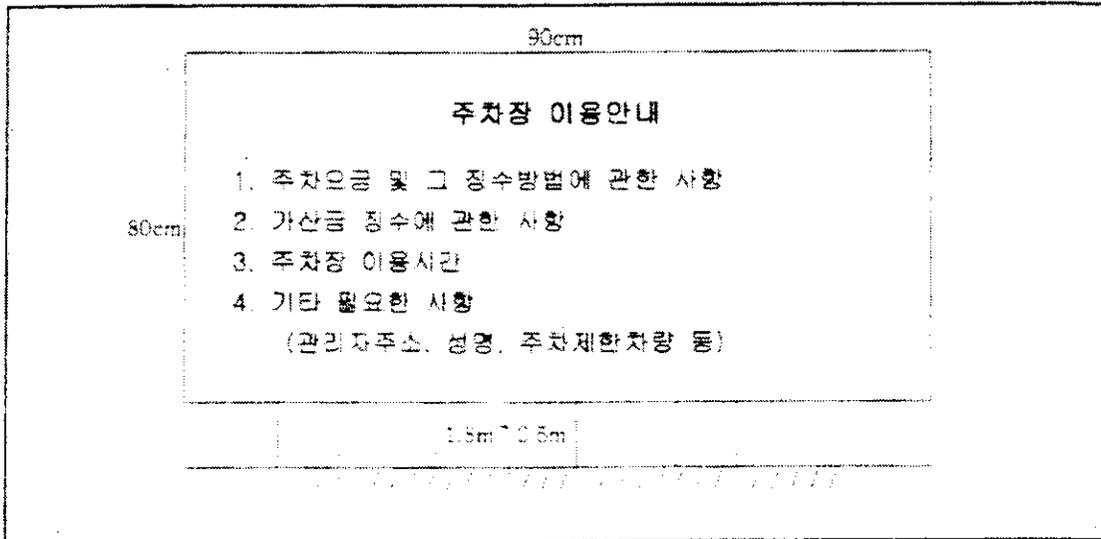
(단위 : 만 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 정 금	가 감 후 과 정 금	해 당 법 규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위 반 시	50	45	법6조 제1항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 반 시	50	45	법17조 제2항
	2회 이상 위반시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 선명령에 위반한 때	위 반 시	50	45	법23조 제3항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위 반 시	50	45	법25조 제1항
	2회 위반시		50	

< 비 고 >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

(표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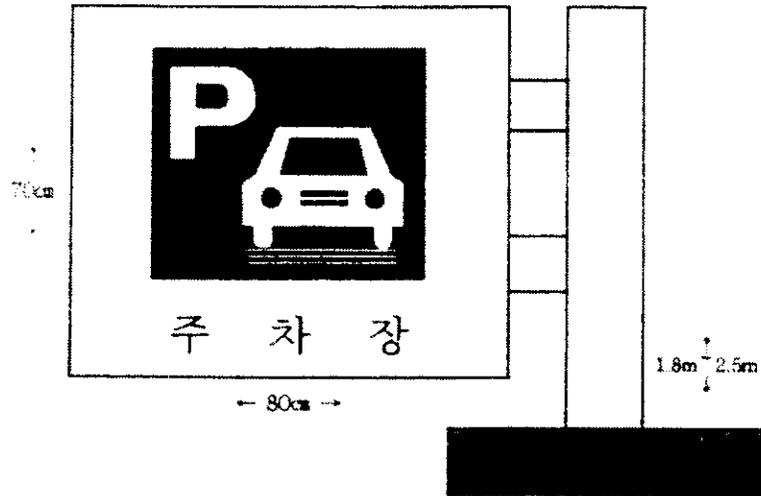
구 분	재 료	표 채	
		바탕	글씨(고유)
도상주차장	알루미늄판	흰색	검정색
해당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흰색	검정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흰색	검정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 주차장 표시(제8조제2항 관련)

노외주차장표지(제4조제2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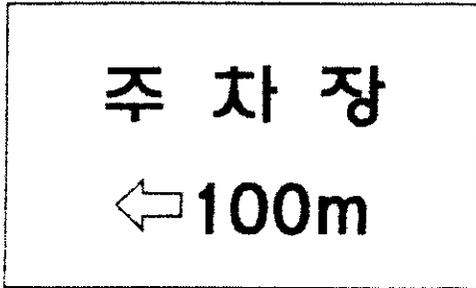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내부표지판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세로 25cm)
문자(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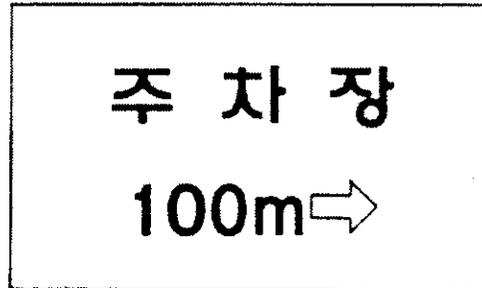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8조제4항 관련)

< 예 1 >



< 예 2 >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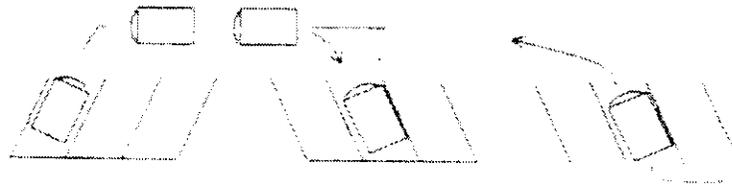
주차 방법 및 배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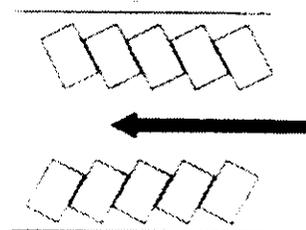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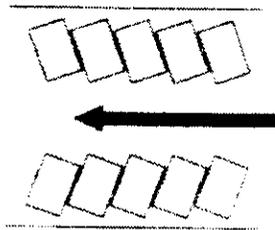
전진주차 전진말차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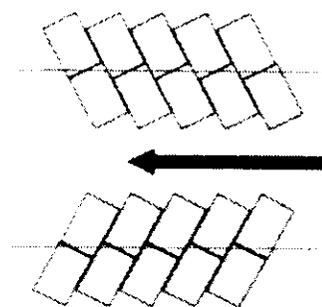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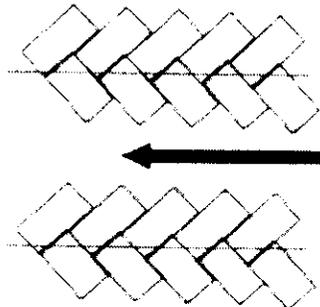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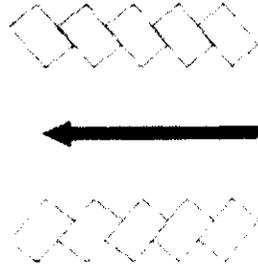


다. 45°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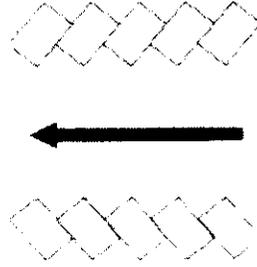
라. 45°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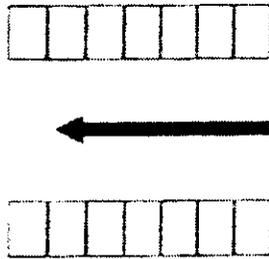
마. 6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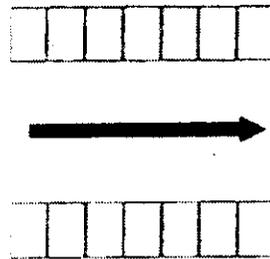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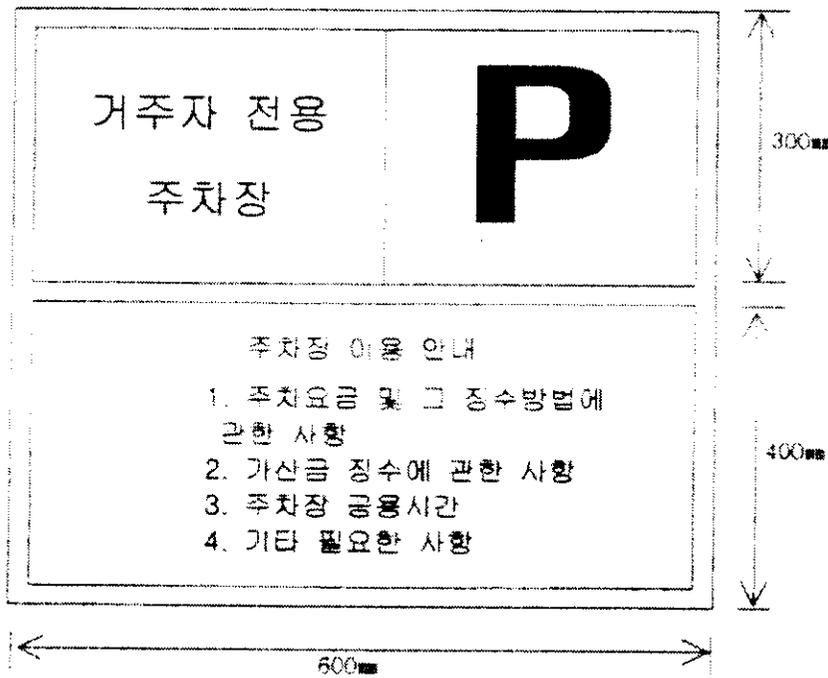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 전용 주차장 표지판(제14조 관련)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문 자 : 흰색, 고딕체
- 태 두 리 : 백색
- 바 탕 : 청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주차구획은 일련번호로 지정한다.

1.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 앞 면 >

5cm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시 장	안
		9cm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 뒷 면 >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은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해드립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8조제1항관련)

발급 번호	발급 일시	신 고 인			사용시간	차량번호	비 고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제20조제3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 높이(100 ~ 12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행정처분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p> <p>양주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 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구 술 의 견 기 록 서		
1. 예정된행정처분의 제목		
2. 의견 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진 술 요 지		
5.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6. 기 타		
<p>년 월 일</p> <p>기록자 직 위</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서명)</p> <p>진술한 대로 기록하였음을 확인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출인 성명 (서명)</p>		
비 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 한함	

1. 제안이유